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19세 미만 자살자의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와 형사사법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, 시·도 교육감 및 학교, 청소년 관련 기관, 경찰서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12조의3제7항 및 제8항 신설).
-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도록 함(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).
-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정책 수립, 자살 관련 통계·연구 등을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 등을 가명정보 형태로 결합 및 분석하여 외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의5 신설).
- 취약계층 지원기관이 상담·지원 과정에서 자살위험자를 발굴한 경우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본인 동의를 얻어 자살예방센터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위험자의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이 참여

하는 협의체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의2 신설).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,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의2 신설).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위한 상담 등 지원 업무를 하는 기관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 업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제3항 신설).
-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자살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와 사망·상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·형사상 책임을 감면함(안 제24조의3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 제11조의2제3항에서 ‘청소년 자살자 관련 자료 또는 정보’에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,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합의하여 제시함.

개 정 안	수정의견
제11조의2(심리부검) ③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제2항에 따라 심리부검을 위탁받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포함하며, 이하 “심리부검 수행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은 19세 미만의 자살자에 대하여 심리부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<u>심리부검에 필요한 범위에서</u> 19세 미만의 자살자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	제11조의2(심리부검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심리부검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7.(생략)	1. ~ 7.(생략)

-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 제11조의2제4항 및 제25조제1항제1호에 대하여, 심리부검 자료 및 정보에 포함된 “개인정보”에 관하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,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합의하여 이하 수정의견을 제시함.

개 정 안	수정의견
제11조의2(심리부검) ④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<u>청소년</u> 자살자 관련 자료·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·누설하여서는 <u>아니 된다.</u>	제11조의2(심리부검) ④ ----- ----- ----- --- <u>19세 미만의</u> ----- ----- <u>의 용도로</u> ----- ----- ----- <u>아니 된다. 이 경우</u> <u>개인정보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)의 목적 외 사용, 제공·누설 및 그 처벌에 관하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다.</u>
제25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<u>자료 또는 정보를</u>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	제25조(벌칙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<u>자료 또는 정보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)</u> 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

-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 제12조의5에 대하여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 규정¹⁾과 개정안의 관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,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합의하여 이하 수정의견을 제시함.

개 정 안	수정의견
제12조의5(형사사법정보와 공공 데이터의 결합·분석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정책의 수립, 자살통계의 작성, 자살 및 자살예방 관련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와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할 수 있다.</u> 1. ~ 3. (생략)	제12조의5(형사사법정보와 공공 데이터의 결합·분석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결합·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</u> 1. ~ 3. (생략)
② 제1항에 <u>따른 정보의 결합 및 결합정보의 외부 반출에 대하여는 「개인정보 보호</u>	② 제1항에 <u>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</u>

1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제28조의3(가명정보의 결합 제한)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.

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,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·절차, 관리·감독,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·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개 정 안	수정의견
<u>법」 제28조의3을 준용하며,</u> <u>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의 결</u> <u>합 및 외부 반출 과정에서 개</u> <u>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</u> <u>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</u> <u>한다.</u>	<u>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</u> <u>따른다.</u>

- 그 외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
다 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(전문위원 윤 상 열)